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인도

※본 자료는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이며,
현행 법제와는 상이할 수 있는 참고용 자료임을 알립니다.



1. 결제 및 환불 관련

1

1. 결제수단	2
1-1. 대금 지급 방법	2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2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2
2. 표시광고	2
2-1. 표시광고(정보제공)	2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3
3. 청약철회	4
3-1. 청약철회	4
3-2. 환불	4
4. 환불	5
4-1. 표준약관 환불	5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5
5. 미성년자 결제	5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5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관련)	5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5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5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6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
6-1. 전자문서 활용	6
6-2. 거래기록 보존	6
6-3. 조작 실수 방지	6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7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7
6-6. 청약 확인	7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8
6-8. 결제한도	8
6-9. 추천 광고	8

1. 등급심의	9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10
1-2. 등급분류 주체	10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10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10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10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10
2. 등급분류 사후관리	10
2-1. 등급분류의 거부	10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10
2-3. 등급분류 효력	10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11
2-5. 등급의 조정	11
2-6. 등급분류의 취소	11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11
3. 확률형 아이템	11
3-1. 판매 가능 여부	11
3-2. 적용 대상	11
3-3. 준수 사항	11
3-4. 미 준수 시 페널티	11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11
4. 광고 관련	12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12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4
1-1. 본인인증/ID 생성	14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14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14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14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14
1-6. 강제적 섯다운제	15
1-7. 섯택적 섯다운제	15
1-8. 미성년자 정의	15
1-9. 미성년자보호법	15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15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7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17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17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17
2. 개인정보 처리	18
2-1. 개인정보 파기	18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18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18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18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19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19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19
3. 개인정보보호	19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19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19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20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20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22
1-1. 게임법 유무	22
1-2. 게임 관련 규정	22
2. 경품 이벤트	22
2-1. 관련 법령	22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22
3-1. 국내 대리인 지정	22
3-2. 법인 설립 의무	22
3-3. 서버 설치 의무	23
4. 외국인 투자 제한	23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23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23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23
5. 서비스 허가증	23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23



Ⅰ. 결제 및 환불 관련

1. 결제수단

1-1. 대금지급 방법

- 관련 법률 : 지급결제시스템법(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 부연 설명 : 인도의 일반결제와 전자결제 시스템은 모두 지급결제시스템법의 규제를 받고 있음

1-2. 포인트/사이버 캐시

- 관련 법률 : N/A

1-3. 사이버 캐시의 상사시효

- 관련 법률 : N/A

2. 표시광고

2-1. 표시광고(정보제공)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Consumer Protection (Ecommerce) Rules)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 규칙 제4조 2항에 따르면, 모든 전자상거래 기업은 플랫폼 상에 아래의 정보를 이용자의 눈에 잘 띄도록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 1) 전자상거래 기업의 법인명
- 2) 본사 및 전 주요 지점의 주소
- 3) 웹사이트명 및 세부정보
- 4) 이메일, 팩스 및 유선 전화번호, 고객지원 및 서비스 담당자 등의 연락처

제6조 5항에 따르면,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판매자는 구매자를 대상으로 아래의 정보를 해당 플랫폼 또는 웹사이트에 배치하여 제공해야 함

- 1)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계약 정보 일체
- 2) 상품 또는 서비스 총 가격의 단일 수치 (해당되는 경우의 배송비, 우편료 및 취급료, 운송비, 관련 세금 등 의무 또는

자발적 부담 비용의 개별 가격)

- 3) 관련 법류에 명시된 필수 공지 및 정보 (해당되는 경우 판매용으로 제공되는 상품의 유통(만료) 기한)
- 4) 구매 전 단계에서 소비자의 정보를 바탕으로 구매를 결정하는데 필수적인, 판매자가 제공하는 원산지 등의 판매용 상품 또는 서비스 관련 세부사항 일체
- 5) 소비자 불편 사항 또는 기타 이유로의 연락을 위한 고객센터 담당자의 이름, 연락처, 직함 등
- 6) 수입 업체명 및 세부사항, 수입품의 진품 여부 또는 관련 보증
- 7)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법의 반품 배송비 정보를 포함하여 교환, 반품 및 환불 조건과 관련된 정확한 정보
- 8)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배송 및 수송과 관련된 세부사항
- 9)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관련 보증 일체

2-2. 표시광고(광고시 배제해야 될 내용)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 제2조 28항에 따르면, 모든 제품이나 서비스와 관련하여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아래와 같은 경우를 의미함
 - 1)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를 허위로 설명하는 경우
 - 2) 해당 제품 또는 서비스의 성격, 내용, 수량, 품질에 대해 소비자에게 허위 보증을 제공하거나 소비자를 오도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3) 제조사나 판매자, 사업자가 불공정 거래 관행에 해당하는 내용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전달하는 경우
 - 4) 중요 정보를 의도적으로 숨기는 경우
 - 5) 동법 제6조 2항에 따라 판매자가 소비자인척 거짓으로 상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후기를 작성하거나 상품 또는 서비스의 품질 및 기능을 왜곡하는 경우

소비자보호법 제21조에 따르면, 중앙소비자보호청(Central Consumer Protection Authority)은 허위광고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에 대해 시정을 요구하거나 처벌할 권한을 가짐

제89조에 따라,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허위광고 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광고를 한 모든 제조사나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및 1백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후속 위반 사항 일체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및 5백만 루피 이하의 벌금형에 처함)

3. 청약철회

3-1.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 제4조 8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어떤 이유로든 일방적으로 구매 주문을 취소했다 하더라도, 유사한 수수료를 전자상거래 기업도 부담하지 않는 한, 구매 확인 후 취소한 건에 대해 소비자에게 취소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3-2. 환불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법(Consumer Protection Act),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Consumer Protection (Ecommerce) Rules)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법에 따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한 후 결함이 있는 상품을 회수 또는 철회하거나 결함이 있는 서비스를 취소 또는 중단한 경우, 그 대금이 이미 결제된 상태라면 법이 규정하거나 현금 메모 또는 영수증에 기재한 기간 내에 또는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 30일 이내에 환불해야 하나 이를 거부하는 행위는 불공정 관행으로 간주됨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 제4조 10항에 따라 모든 전자상거래 기업은 적용 가능한 법률에 명시된 기간 또는 합당한 기간 내에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또는 기타 감독관청이 규정하는 대로 합당한 소비자의 환불 요청에 대한 지급 일체를 수행해야 함

제6조 2항에 따르면, 시장 전자상거래 기업을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든 판매자는 판매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결함이 있거나 위조되었거나 또는 광고나 계약상의 특성 및 특징과 다르거나 명시된 배송 일정보다 늦게 배송된 경우,

소비자가 이미 제품이나 서비스의 가격을 지불했다면 그러한 상품이나 서비스의 반품을 거부하거나 구매 및 구매할 것을 동의한 서비스를 철회 및 중단하기를 거부해서는 안 됨

4. 환불

4-1. 표준약관 환불

- 관련 법률 : N/A

4-2. 표준약관 과오납금 환불

- 관련 법률 : N/A

5. 미성년자 결제

5-1. 미성년자 연령 기준

- 관련 법률 : 성년법(Majority Act)
- 부연 설명 : 성년법 제3조 1항에 따르면, 인도에 거주하는 모든 사람은 만 18세 이상부터 성인으로 간주됨

5-2.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동의(결제 관련)

- 관련 법률 : 인도계약법(Indian Contract Act), 성년법(Majority Act)
- 부연 설명 : 인도계약법 제11조에 따르면, 성년법에서 정의하는 성인의 연령에 속하는 모든 사람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따라서 미성년자와의 계약은 무효 처리함)

5-3. 미성년자 법정대리인 권한

- 관련 법률 : N/A

5-4. 고지의 의무(계약 시)

- 관련 법률 : N/A

5-5. 고지의 의무(게임물 결제 내역 관련)

- 관련 법률 : N/A

6. 결제 환불 관련 기타

6-1. 전자문서 활용

- 관련 법률 :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 부연 설명 : 정보기술법 제10조에 따르면, 계약 성립 시 제안의 전달, 동의, 철회 및 철회 승인이 전자 형식으로 표시되거나 전자 기록을 통해 계약 내용이 표시되는 경우, 그러한 목적을 위해 전자 형태나 수단이 사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행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해선 안 됨

제4조는 전자 기록의 법적 인식 방법에 관하여, 제5조는 전자 서명의 법적 인식 방법에 관하여 설명함

6-2. 거래기록 보존

- 관련 법률 : 정보기술법(Information Technology Act)
- 부연 설명 : 정보기술법 제7조 1항에 따르면, 문서, 기록 또는 정보를 특정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고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 해당 문서나 기록, 정보가 전자 형식으로 유지되고 아래의 내용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정보를 보존해야 함
 - 1) 포함된 정보를 추후 참조할 수 있도록 계속 접근 가능토록 조치
 - 2) 전자 기록이 기존에 생성, 전송 또는 수신된 형식 및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하는 형식으로 유지
 - 3) 이러한 전자 기록의 발송지, 수신지, 발송 날짜 및 시간의 식별을 용이하게 하는 세부사항을 전자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음

6-3. 조작 실수 방지

- 관련 법률 : N/A

6-4. 전자적 대금 지급 신뢰확보

- 관련 법률 : N/A

6-5. 사이버몰 신원 표시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Consumer Protection (Ecommerce) Rules)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 제4조 2항에 따라, 전자 상거래 기업은 플랫폼에 아래 정보를 명확하고 접근 가능한 방식으로 고지해야 함

- 1) 전자상거래 주체의 법인 명
- 2) 본사 및 모든 지점의 주소
- 3) 웹사이트의 이름 및 세부 정보
- 4) 고객센터 전화 혹은 휴대폰 번호

제6조 5항에 따라, 마켓플랫폼 등을 통해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전자상거래 판매자는 다음 정보를 마켓플랫폼 또는 웹사이트에 표시해야 함

- 1) 법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계약 정보 일체
- 2) 제공되는 서비스의 가격, 배송료 및 수수료, 운송비 및 관련 세금과 같은 추가비용
- 3) 관련 법률에 의해 판매에 따라 제공되어야 하는 모든 필수 정보 및 물품의 사용 만료일
- 4) 소비자가 구매 전 단계에서 결정을 내리는데 필요한 생산 국가를 포함한 상품 및 서비스의 모든 세부 정보
- 5) 소비자 고충 처리 또는 기타 문제 보고를 위한 담당자의 이름 및 연락처
- 6) 수입자의 이름과 세부사항 및 수입된 제품의 진위성과 정확성에 대한 보증
- 7) 반환 운송 비용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 경비 환불에 대한 정확한 정보의 제공

6-6. 청약 확인

- 관련 법률 : N/A

6-7. 휴업기간 업무처리

- 관련 법률 : N/A

6-8. 결제한도

- 관련 법률 : N/A

6-9. 추천 광고

- 관련 법률 : N/A

II. 등급분류

1. 등급심의

1-1. 등급분류 필요여부(사전/사후)

- 관련 법률 : N/A

1-2. 등급분류 주체

- 관련 법률 : N/A

1-3. 등급분류 대상 게임물

- 관련 법률 : N/A

1-4. 게임 이용등급 구분 및 이용등급별 분류 사항

- 관련 법률 : N/A

1-5. 등급분류 신청절차 및 필요자료

- 관련 법률 : N/A

1-6. 등급분류 처리기간 및 비용

- 관련 법률 : N/A

2. 등급분류 사후관리

2-1. 등급분류의 거부

- 관련 법률 : N/A

2-2. 등급분류 이후 의무 표기 사항, 방법

- 관련 법률 : N/A

2-3. 등급분류 효력

- 관련 법률 : N/A

2-4. 사후관리를 위한 사업자 준수 제도

- 관련 법률 : N/A

2-5. 등급의 조정

- 관련 법률 : N/A

2-6. 등급분류의 취소

- 관련 법률 : N/A

2-7. 등급분류 효력 유지기간(별도 갱신 필요성)

- 관련 법률 : N/A

3. 확률형 아이템

3-1. 판매 가능 여부

- 관련 법률 : N/A

3-2. 적용 대상

- 관련 법률 : N/A

3-3. 준수 사항

- 관련 법률 : N/A

3-4. 미 준수 시 페널티

- 관련 법률 : N/A

3-5. 자율규제 존재 여부 및 세부내용

- 관련 법률 : N/A

4. 광고 관련

4-1. 콘텐츠 광고 규정 등 광고 내 등급 표기 관련 표시의무

- 관련 법률 : ASCI 가이드라인(ASCI' s Guidelines)
- 부연 설명 : 어떤 게임 광고도 만 18세 미만인 자 또는 만 18세 미만으로 보이는 자가 실물화폐 상금을 위한 온라인게임에 참여하는 모습을 포함할 수 없으며, 그러한 자가 이러한 게임에 참여할 수 있다는 바를 암시해서는 안 됨

이러한 게임의 모든 광고는 아래와 같은 고지사항을 포함해야 함

- 1) 인쇄/고정 “본 게임은 재정적 리스크를 포함하며, 중독성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광고면적의 20%를 차지해야 하며, ASCI 규정에 명시된 고지사항 지침 제4조 1, 2, 4, 8항을 구체적으로 충족해야 함)
- 2) 오디오/비디오 “본 게임은 재정적 리스크를 포함하며, 중독성이 있습니다.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광고의 마지막에 일반적인 발언 속도로 삽입되어야 하며, 광고에서 쓰인 언어와 같은 언어여야 하고, 오디오 및 비주얼 매체의 경우 고지사항도 오디오 및 비주얼 형식이어야 함)

Ⅲ.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 본인인증/미성년자 관련

1-1. 본인인증/ID 생성

- 관련 법률 : N/A

1-2. 연령 확인(미성년자 연령 확인)

- 관련 법률 : N/A

1-3.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 동의(개인정보 관련)

- 관련 법률 : N/A
- 부연 설명 : 2019년에 개인정보보호법안(Personal Data Protection Bill)이 발의 되었지만 아직 통과하지는 못함

개인정보보호법안 제16조 2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의 수탁자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기 전에 소유자의 연령을 확인하여 부모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규정으로 명시할 수 있다고 언급

개인정보보호법안 제16조 3항은 2항에 따르면 아동의 연령 확인 방법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고려하여 규정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언급

- 1) 처리된 개인정보의 양
- 2) 아동의 정보일 가능성이 있는 개인정보의 비율
- 3) 개인정보의 처리로 인해 아동에게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
- 4) 규정할 수 있는 기타 요인

1-4. 게임물 이용시간 및 결제정보 등 게임물 이용내역 법정대리인에 대한 고지

- 관련 법률 : N/A

1-5. 미성년자 청약철회

- 관련 법률 : N/A

1-6. 강제적 섷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7. 섷택적 섷다운제

- 관련 법률 : N/A

1-8. 미성년자 정의

- 관련 법률 : 소년사법(Juvenile Justice Act)
- 부연 설명 : 소년사법 제2조 35항에 따르면, 청소년은 만 18세 미만을 의미함

1-9. 미성년자보호법

- 관련 법률 : N/A

1-10. 미성년자 본인인증 및 법정대리인 관련 법률(게임이용 관련)

- 관련 법률 : N/A

Ⅳ. 개인정보보호

1. 개인정보 수집 및 동의

1-1. 개인정보 수집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정보기술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Rules)
- 부연 설명 : 정보기술 규칙 제5조 1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은 개인정보를 수집하기 전에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의 사용 목적에 관하여 서신,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정보 제공자로부터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함

제5조 2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은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를 수집해서는 안 되나, 아래의 경우는 예외로 함

- 1)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의 기능이나 활동과 관련된 합법적인 목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 2)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의 수집이 그러한 목적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경우

1-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방법(동의, 고지 등)

- 관련 법률 : 정보기술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Rules)
- 부연 설명 : 정보기술 규칙 제6조 1항에 따르면, 법인이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를 제3자에게 공개할 시 그러한 정보를 합법적 계약이나 다른 방식을 통해 제공한 자로부터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단, 그러한 정보 공개가 법인과 정보 제공자 간의 계약상 합의 되었거나 법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해 정보를 공유해야 하는 경우는 제외)

범죄 예방 및 사이버 사건 등의 수사, 기소, 범죄 행위 처벌 또는 신원 확인이 목적이라면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 등의 정보 제공자의 사전 동의 없이 법에 규정된 정부기관과 공유해야 함

1-3. 개인정보 처리 위탁(동의, 고지, 수탁 업체 계약방법)

- 관련 법률 : 정보기술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Rules)
- 부연 설명 : 정보기술 규칙 제6조 내용 외에 별도 규정은 없음('1-2 개인정보

2. 개인정보 처리

2-1. 개인정보 파기

- 관련 법률 : N/A

2-2. 장기 미 접속 계정 휴면 처리 방법

- 관련 법률 : N/A

2-3. 개인정보 처리 방침

- 관련 법률 : 정보기술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Rules)
- 부연 설명 : 정보기술 규칙 제4조에 따르면, 정보 제공자의 정보를 수집, 수신, 소유, 저장, 거래 또는 취급하는 법인이나 그 대리인은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 등의 정보를 포함한 개인정보의 취급에 관한 개인정보보호정책을 제공하고, 그러한 정보를 제공한 정보 제공자도 합법적인 계약에 따라 해당 개인정보보호정책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아래 내용을 포함해야 함
 - 1) 해당 관행 및 정책에 대한 명확하고 쉽게 접근 가능한 서술
 - 2) 정보기술 규칙 제3조에 따라 수집된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의 유형
 - 3) 그러한 정보의 수집 및 사용 목적
 - 4) 정보기술 규칙 제6조에 명시된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의 공개
 - 5) 정보기술 규칙 제8조에 따라 제공된 합리적인 보안 관행 및 절차

2-4. 개인정보 이용내역 통지

- 관련 법률 : 정보기술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Rules)
- 부연 설명 : 정보기술 규칙 제5조 3항에 따르면, 관계자로부터 직접 정보를 수집하는 동안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은 해당 관계자가 아래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함
 -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 정보를 수집하는 목적, 지정된 정보

수령인, 정보 수집 기관 및 정보 보유 예정 기관의 이름 및 주소

2-5. 해외 사업자의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N/A

2-6. 국외 이전 방법(동의, 방법, 동의 시 고지사항)

- 관련 법률 : 정보기술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Rules)
- 부연 설명 : 정보기술 규칙 제7조에 따르면,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은 본 법률이 법인에 요구하는 바와 동일한 수준의 개인정보보호를 보장한다면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를 인도 내외 법인이나 대리인, 또는 다른 국가에 위치한 법인이나 대리인에게 전송 가능함

단, 해당 법인이나 대리인과 정보 제공자 간의 합법적인 계약의 수행에 필요하거나 당사자가 정보 이전에 동의한 경우에만 개인정보의 이전이 가능함

2-7. 광고성 정보(수신, 동의, 고지, 발송, 방법)

- 관련 법률 : N/A

3. 개인정보보호

3-1. 이용자 개인정보 권익보호방법

- 관련 법률 : 정보기술 규칙(Information Technology Rules)
- 부연 설명 : 정보기술 규칙 제5조 6항에 따르면, 법인 또는 그 대리인은 정보 제공자의 요청에 따라 정보를 검토하고 부정확하거나 불충분한 것으로 판명된 민감한 개인정보 또는 데이터를 최대한 수정 및 개정해야 함

3-2.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보상보험 요건

- 관련 법률 : N/A

3-3. 데이터 침해에 대한 보상

- 관련 법률 : N/A

3-4. 개인정보 유출 손해 배상 보험

- 관련 법률 : N/A

V. 기타 분류

1. 게임 관련 법령/규정

1-1. 게임법 유무

- 관련 법률 : N/A

1-2. 게임 관련 규정

- 관련 법률 : 온라인 기술게임헌장(Online Skills Games Chapter)
- 부연 설명 : 전인도게임연맹(All India Gaming Federation)은 자체 규제를 위해 온라인기술게임헌장을 게시하고 있으며, 게임 플레이를 위해 현금이 투입되는 온라인 포커, 판타지 스포츠 게임물 등의 유통에 대한 규정이 나열되어있음

2. 경품 이벤트

2-1. 관련 법령

- 관련 법률 : 경품경쟁법(Prize Competition Act)
- 부연 설명 : 경품경쟁법 제4조에서는 월 1천 루피를 초과하는 경품 경쟁을 금지하고 제5조에서는 월 1천 루피를 초과하지 않는 경품 경쟁은 허가한다고 규정

3. 법인 설립/서버 필수 여부 등

3-1. 국내 대리인 지정

- 관련 법률 : 소비자보호(전자상거래) 규칙(Consumer Protection (Ecommerce) Rules)
- 부연 설명 : 소비자보호 규칙 제4조 내용 외에 별도 규정은 없으며, 제4조 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기업은 해당 법률 조항 또는 그에 따른 규칙의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연락 담당자를 두거나 인도에 거주하는 상급 대체인력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도록 해야 함

3-2. 법인 설립 의무

- 관련 법률 : N/A

3-3. 서버 설치 의무

- 관련 법률 : N/A

4. 외국인 투자 제한

4-1. 외국인 투자대상 제외

- 관련 법률 : N/A

4-2. 외국인 투자 제한 업종

- 관련 법률 : N/A

4-3. 외국인의 국내 진출

- 관련 법률 : N/A

5. 서비스 허가증

5-1. 서비스 허가증(콘텐츠 제공시 승인사항)

- 관련 법률 : N/A

글로벌 정책환경 개선 TF 조사결과 인도



한국게임산업협회 Korea Association of Game Industry

(06251)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124 청보빌딩 7, 8F

Tel. 02.6203.1900 Fax. 02.3477.2708 E-mail. k-games@gamek.or.kr